

	산학협력 가족회사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20. 4. 1.
		최종개정일자	2022. 4. 1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 가족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“가족회사”라 함은 현장실습, 캡스톤디자인, 주문식과정, 취업, 연구, 공용장비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본교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.
2. “산업체”라 함은 기업, 연구소, 공공기관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협력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.
3. “산학멘토교수”라 함은 본교의 교원으로서 협약을 체결한 가족회사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 및 지도하는 교원을 말한다.
4. “산학공용장비”는 공용장비센터가 보유 및 관리하는 공용장비를 말한다.

제2장 운영 및 관리

제3조(주관부서의 업무) 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산학처 취창업지원센터(이하 센터)로 하며,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족회사의 가입신청, 승인, 탈퇴에 관한 사항
2. 가족회사 DB구축 및 관리
3. 가족회사와의 산학 교류활동 지원
4. 기타 가족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가입신청 및 승인)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체 중 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가입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교와 산학협력협약체결 업체
 2. 본교와 산학교류를 하고자 하는 업체
- ② 센터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다.
- ③ 다음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대해서 가족회사에 준하여 자격을 인정한다.
1. 취업약정형 및 사회맞춤형학과(주문식 교육과정) 운영 협약
 2. 현장실습 협약(표준현장실습 학기제 협약 등)

제5조(협약서 및 증서발급) ① 협약서는 [별지 2호 서식]에 의거하여 작성하되,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.

- ②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 증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발급한다.
- ③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,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

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산학멘토교수 운영) ①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산학멘토교수의 동의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멘토교수로 확정한다.

② 희망 산학멘토교수를 변경 또는 추가 할 경우 멘토교수 변경 및 추가 신청서[별지 4호 서식]를 통하여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.

제7조(해지 및 탈퇴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족회사 탈퇴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가족회사가 탈퇴 신청서[별지 제5호 서식]를 제출할 경우
2. 가족회사가 휴.폐업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
3. 가족회사가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본교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경우
4. 본교와 산학협력 관련 실적이 전무한 경우
5. 기타 총장이 가족회사의 탈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가족회사에 대한 지원) 가족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받는다.

1. 각종 정부지원사업 공동 참여 및 우선 지원 안내
2. 본교의 산학협력프로그램 참여 기회 우선 제공
3. 본교의 장비활용 및 연구장비 이용
4. 기타 산학협력관련 제반 업무

제9조(가족회사 등급) 가족회사는 다음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구분	등급	내용
프리미엄 기업	S	파트너십 기업 중 산학공동장비활용(재정기여), 학생취업 등에서 우수한 산학협력 성과를 보인 가족회사
골드 기업	A	멤버십 기업중 학과 교육과정개발 참여, 산학공동장비활용, 산학 연계 교육과정(캡스톤디자인, 현장실습), 참여 등 다수의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회사
베이직 기업	B	현장실습운영 및 기타 산학협력 제휴를 맺은 가족회사
스타트 기업	C	가족회사 등록 및 협약만 맺은 가족회사

1. 가족회사 등급은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통해 갱신 한다.
2. 등급이 높을수록 산학공동장비 활용 우선권을 부여한다.
3. 효율적인 가족회사 관리 운영을 위해 분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가족회사 교류활동 실적 보고) ① 산학멘토교수는 매 학년도 말 가족회사 교류활동 실적보고서[별지 제6호 서식]를 센터로 제출한다.

② 센터는 실적보고서를 당해연도 가족회사 연간평가 및 교수업적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.

제3장 기 타

제10조(정보보호) 본교는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혹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족회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목포과학대학교 가족회사 가입신청서

1. 업체 현황

업체 현황	업체명		대표자명		
	형태	☐ 법인 ☐ 개인	설립일자	년 월 일	
	사업자등록번호		업태, 종목		
	직전년도 매출액		임직원수	명	기업부설 연구소 운영 여부 예 / 아니오
소재지	주 소				
	전화번호		FAX		
실 무 책임자	성 명		부서/직위		
	휴대전화		E-mail		

2. 신청 내용

추천인	소 속		이 름		전화번호	
	인지방법	☐ 대학교수 ☐ 인터넷 ☐ 브로슈어 ☐ 기타()				
산학 멘토교수	_____ 과 _____ 교수					
산학협력 희망분야 (중복선택가능)	☐ 연구장비 공동활용 ☐ 조직분야 지원(재직자교육, 연구인력제공 등) ☐ 대학장학금/발전기금지원 ☐ 현장실습/현장연수(인턴십) 지원 ☐ 학생취업 ☐ 재학생 특강/세미나/멘토링/동아리 지도 지원 ☐ 취업지원 ☐ 기타 협력내용 _____					

위와 같이 목포과학대학교 가족회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이 일

대표자 성명

(직인날인 또는 서명)



목포과학대학교 총장 귀하

<첨부>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

산학협력(가족회사) 협약서

산업체
로고

『목포과학대학교』와 『000』은(는) 산학협력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, 상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여 교육자원 및 산업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한다.

제1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.

- 재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상호협력
-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공동개발
- 취업연계 프로그램 공동개발 협력
- 지속적인 고용 협력체제 구축
- 산업체인사 외부강사 활용
- 산·학간 현장장비 및 기자재 공동 활용
- 신기술 기능인력 교육 및 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
-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2조(협약의 발효와 폐지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기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쌍방의 합의하에 침삭 및 폐지 될 수 있고, 이 경우 1개월 이전에 상호 서면 통보에 의한다.

제3조(기타)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기관 상호간에 합의하여 실시하되,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기업간, 또는 통상적 상관례에 따른다.

20 년 월 일

목포과학대학교
총장

기업명
대표 000

제 호

가 족 회 사 증 서

회 사 명 :

대 표 :

귀사는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우수기업으로서
우리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
및 역량강화라는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
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포과학대학교 가족
회사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목 포 과 학 대 학 교 총 장

[별지 제4호 서식]

가족회사 멘토교수 변경 및 추가 신청서			
1. 신청 가족회사 정보			
업체(기관)명		대표자명	
2. 기존 멘토교수			
멘토교수 명		소속	
3. (변경, 추가) 후 멘토교수			
멘토교수 명		소속	
4. (변경, 추가) 사유			
상기 내용과 같이 (변경, 추가) 신청하고자 합니다. 20 년 월 일 기존 멘토교수: 학 과 명 교 수 (인) 변경, 추가 멘토교수: 학 과 명 교 수 (인) 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귀하			

[별지 제5호 서식]

목포과학대학교 가족회사 탈퇴 신청서

1. 업체 현황

업체 현황	업체명			대표자명		
	형태	☐ 법인 ☐ 개인		설립일자	년 월 일	
	사업자등록번호			업태, 종목		
소재지	주 소					
	전화번호			FAX		
실 무 책임자	성 명			부서/직위		
	휴대전화			E-mail		

2. 가족회사 탈퇴 사유

위와 같이 목포과학대학교 가족회사 탈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표자 성명

(직인날인 또는 서명)



목포과학대학교 총장 귀하

20 학년도 _____과 가족회사 교류활동 실적보고서

1. 20 학년도 가족회사 신규 체결 현황

순번	멘토(담당)교수	산학협력 가족회사 체결 업체		체결일자	비고
		산업체명	담당자	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
2. 가족회사 활동실적

가. 공동연구개발

순번	산업체명	멘토교수	공동연구개발 내용	연구기간	비고
1					
2					
3					

나. 연구장비 공동활용

순번	산업체명	멘토교수	공동활용 시설명		활 용 목 적	시설공동 활용기간	비고
			학교	산업체			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
다. 재직자의 대학 교육 참여(가족회사 임직원 겸임교원 임용 등)

순번	산업체명	성명	임 면 구 분			임용기간	비고
			신규	재임용	해임		
1							
2							
3							

라. 대학 장학금 및 기금 지원

1) 무상/유상 기술이전

순번	산업체명	멘토교수	무상/유상 기술이전 내용	기간(일자)	비고
1					
2					

2) 장학금/발전기금 기탁 실적

순번	산업체명	멘토교수	수혜금액(천원)	유치일자	비고
1					
2					

3) 실험 실습 기자재 기증 실적

순번	산업체명	멘토교수	기 증 기 자 재				기 자 재 기증일자	비고
			품명	규격	수량	평가액		
1								
2								

마. 현장실습/현장연수 교육참여 및 현장견학 제공

순번	산업체명	멘토교수	이수(참여) 인원			기간(일자)	비고
			현장실습	현장연수	현장견학		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
바. 당해연도 졸업생의 협약업체 취업 실적

순번	산업체명	멘토교수	취업자			취업부서	취업일	비고
			학번	성명	졸업월	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
사. 기타협력

1)특강(취업특강, 산학협력특강 등) 및 세미나 제공

순번	산업체명	협약업체 강사		내 용	일자	비고
		직위	성명			
1						
2						

2) 멘토링 및 (전공)동아리 지도 실적

순번	산업체명	협약업체 멘토		멘티 (학생, 동아리)	내 용	일자	비고
		직위	성명				
1							
2							

3) 학내 및 산업체 산학협력 행사 참여

순번	행사명	참여자		내용	일자	비고
		업체명	성명			
1						
2						

4) 학과산학협력위원회 및 위원회 활동 참여

순번	위원회명	참여자		토 의 안 건	일자	비고
		업체명	성명			
1						
2						

5)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

순번	산업체명	참여자		지도 및 자문 내용	일자	비고
		소속	성명			
1						
2						

20 년 월 일

상기 작성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소속 :

학과장 :

(서명)